

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-3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10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장기재직·퇴직예정 공무원 연수 운영 시 공적심사, 결격사유 검증 등 일반 포상과 동일한 수준의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조례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연수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실히 하고자 함.

※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('21. 4. 12. 의결)

- 장기근속·퇴직(예정) 공직자 및 가족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 삭제
- 법령 내 일부 용어가 현재 사용하는 것과 불일치하거나, 같은 뜻임에도 달리 표현하여 정비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‘주민센터’에서 ‘행정복지센터’로 조례상 용어를 현행 행정 체계에 맞게 정비(안 제2조)
- 나. ‘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·퇴직예정 소속 공무원’으로 조건을 명시하여, 연차에 따른 일률적 지원이 아닌 일반 포상절차를 준수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정의를 명확히 함.(안 제7조)
- 다. 조례 내 용어 표기 일관성 확보를 위해 “국내·외”를 “국내외”로 정비하고, 조례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미가 중복되는 “소속 직원” 표기를 삭제(안 제7조)
- 라.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따라 정의규정에서 정의된 용어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의 불필요한 약칭 삭제(안 제16조 내지 제1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【붙임 1】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【붙임 2】
- 다. 관계법령발췌서 : 【붙임 3】
- 라.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- 마. 예산수반사항 : 【붙임 4】

※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- 바. 사전예고(결과) : 의견없음

○ 입법예고 : 2026. 6. 2. ~ 2026. 6. 22.(20일간)

사. 기타 참고사항

- 1) 현행조례 : 【붙임 5】
- 2) 방침결정문 : 【붙임 6】

【붙임 1】

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동주민센터”를 “동 행정복지센터”로 한다.

제7조제3호 중 “장기재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국내·외”를 “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·퇴직예정 소속 공무원 국내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·외”를 “모범공무원의 국내외”로 한다.

제16조제2호 중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을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(이하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이라 한다)”를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을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을 각각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로 한다.

제19조제1항 중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을 “보조공학기기·장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실 · 국		행정안전교육국
입 안 자	총무과장	정 남 진
	후생교육팀장	김 서 현
	담 당 자 (연 락 처)	문 갑 성 (481-2127)

【붙임 2】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“소속 공무원”이란 안산시 분청 · 직속기관 · 사업소 · 구청 · <u>동주민센터</u> 및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. 2. ~ 5. (생략)	제2조(정의)----- -----. 1.----- ----- <u>동 행정복지센터</u> ----- -----. 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 1. · 2. (생략) 3. <u>장기재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국내 · 외 연수</u> (배우자 포함. 다만, 부득이한 경우 1촌 직계혈족 포함) 4. <u>모범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 · 외 선진문화 체험</u> 5. ~ 8. (생략)	제7조(후생복지사업의 시행) 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시정발전에 기여한 장기재직 · 퇴직예정 소속 공무원 국내외</u> ----- ----- 4. <u>모범공무원의 국내외</u> ---- ----- 5. ~ 8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장애인공무원 지원)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	제16조(장애인공무원 지원) ---- ----- 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<u>보조공학기기</u> 등의 지원 3. · 4. (생략) 제17조(근로지원인의 배정·보조공학기기·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) ①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)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, 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(이하 “보조공학기기 등”이라 한다) 지급은 장애인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)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.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<u>보조공학기기</u> 등의 신청방법,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 제18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① (생략)	----- 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 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 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 제17조(근로지원인의 배정·보조공학기기·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-----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 ----- ---. 제18조(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)①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<u>보조공학기기</u>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근로지원인 배정 및 <u>보조공학기기</u>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. <u>보조공학기기</u>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. · 4. (생략) ③ ~ ⑤ (생략) 제19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 ① 시장은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<u>보조공학기기</u>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. ② (생략)	② ----- -----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. 1. ----- 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 2. 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 ----- 3. · 4. (현행과 같음)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제19조(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) ①----- ----- -----<u>보조공학기기·장비</u>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